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9. 29 선고 2016가단5379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지엘로지스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9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6. 7. 25. 위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1,935,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7. 26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안효승

별지